**화장품 시험 위․수탁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바이오스펙트럼㈜ (이하 “을”이라 한다)은 화장품법 제 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화장품에 대한 시험을 위․수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화장품에 대한 시험을 “을”이 위탁 받아 시행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불량품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화장품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시험에 대하여 화장품법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거나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2.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3. “완제품”이라 함은 모든 제조공정을 끝낸 화장품을 말한다.

**제3조(위․수탁계약등)**

① 이 계약서에 의하여 “을”이 시험을 시행하는 “갑”의 화장품은 “갑”이 제조․수입한 화장품으로 한다.

② 이 계약서 작성 시 “갑”은 “을”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품목명 및 시험 항목을 “별지1호”에 의거 작성 제출하고 추후 변경 시에는 “을”과 협의하여 “별지1호”에 기재한 후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시험 시행)**

① “갑”은 시험을 받고자 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그 검사에 소요되는 검체를 시험의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을”은 검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검체를 “을”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시험성적서로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하며 동 성적서에는 시험을 의뢰한 “갑”의 검체에 한하여 유효함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검사에 필요한 처리기한은 9 일로 한다.

④ “갑”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갑이 보유하지 않은 표준품, 시약 등 시험에 필요한 물품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은 제출시점에서 기산한다.

**제5조(수수료)**

① 화장품 검사 수수료는 “을”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검사를 시행하되, “갑”이 별도로 시험법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험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단, 별도의 시험법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을”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② “을”은 업무수행 중 획득한 “갑”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갑”의 서면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알릴 수 없다.

**제6조(“갑”의 책임)**

① “갑”은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에게 일반적인 화장품 검사 시험방법 외의 별도의 시험방법을 제공하여 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 결과에 대해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갑”은 “을”로부터 교부 받은 시험․검사 성적서를 그 검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광고․선전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을”의 책임)**

① “을”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검사를 시행하되, “갑”이 별도로 시험법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험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단, 별도의 시험법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을”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② “을”은 업무수행 중 획득한 “갑”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갑”의 서면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알릴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을”은 “갑”이 계약서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시험 의뢰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을”의 시험이 부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을”과 “갑”은 상호 협의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 계약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의 영업권이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9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서의 제 규정

에 대하여 “갑”과 “을”이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재판관할은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효력 등)** 이 계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상호 서명 날인한 날

부터 1년 동안(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계약서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의 종료 시까지 이 계약서의 관련조항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 계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  |  |
| --- | --- |
|  “갑” 주소: 대표 (인) | “을”주소: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40-53(가장동)바이오스펙트럼㈜대표 박 덕 훈 (인) |